

전임 및 내부위촉사정관 연수에 관한 규정

제 정 2012. 4.
개 정 2014.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잠재력있는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임 및 내부위촉사정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제2조 (연수의 범위) 연수란 내부·외부연수 및 대학에서 실시되는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목표)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의 윤리성, 책무성 확보 및 공정하며 신뢰성있는 운영을 꾀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고자 한다.

제4조 (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된다.

제5조 (연수시수) 이 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수에 참여한다.

1. 전임, 전환, 교수사정관은 내부연수 30시간 이상 및 외부연수 10시간 이상 참여한다. 단, 전임입학사정관은 외부연수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내부·외부위촉사정관은 내부연수 30시간 이상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연수에도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내부연수의 주요내용) 이 규정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연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수
2. 전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3. 입학사정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4. 사정관 자질 함양을 위한 실습 연수
5. 기타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필요한 연수

제7조 (연수 예외사항) 교수, 내부, 외부위촉사정관 중 전학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임명된 입학사정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에 의거하여 제5조에 규정된 연수시수를 1/2 시수만 이수하여도 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연수에 관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 및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